

제주지방법원 2020. 6. 9 선고 2019나14226(본소), 2019나14233(반소) 판결

[매매대금반환 · 기계대금 청구]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, 항소인 겸 피항소인

A 주식회사

피고(반소원고), 피항소인 겸 항소인

B

변 론 종결 2020. 4. 28.

판결 선고 2020. 6. 9.

제 1 심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9. 8. 27. 선고 2016가단58729(본소), 2017가단55024(반소)

판결

주 문

1.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가. 피고(반소원고)는 원고(반소피고)로부터 '제주시 K에 보관되어 있는 골판지 제작기계 E골

싱글웨이샤 1,450mm'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(반소피고)에게 25,990,000원 및 그 중

25,000,000원에 대하여 2019. 1. 17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나. 원고(반소피고)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.

2. 피고(반소원고)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.

3.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30%는 원고(반소피고)가, 나머지는 피고(반소원고)가

각 부담한다.

4.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가. 본소 : 피고(반소원고, 이하 '피고'라고만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'원고'라고만 한다)에게 45,365,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나. 반소 : 원고는 피고에게 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. 9. 14.부터 이 사건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가. 원고 :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9,375,3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항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나. 피고 :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.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 원고는 피고에게 반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○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행의 "싱글웨어샤"를 "싱글웨어샤"로 고쳐 쓴다.

제1심 판결문 제4쪽 제4행의 "22,000,000에"를 "22,000,000원에"로 고쳐 쓴다.

○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여 쓴다.

『 바. 이 사건 기계는 현재 원고 주소지에 보관되어 있다. 』

○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0행의 "이 법원의"를 "제1심의"로 고쳐 쓴다.

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5행부터 제7쪽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.

『 나) 원고는 이 사건 기계가 정상 가동할 것으로 믿고 H조합으로부터 EB골 골판지를 주문받아 미리 I 에 원지대금 14,265,900원, J에 인쇄대금 5,009,400원을 지출하여 인쇄까지 마친 원지를 준비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원지대금 및 인쇄대금 합계19,275,3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, 거래장부(갑 제12호증의 1,2)에 I 와 J와의 거래일로 기재된 각 "12. 24."이 2015년인지 2016년인지 불분명한 점(만일 2015. 12. 24.이라면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의 시점이고, 또한 2016. 12. 24.이라면 이는 이미 원고가 새로운 E골 골판지 제작기계를 구입하여 다시골판지 상자의 제조 · 판매를 하게 된 후인데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의 시점이므로, 위 주장의 비용 지출 손해가 과연 이 사건 기계의 하자과 관련된 것인지 알수 없다), 원고와 H조합 사이의 골판지 공급에 관한 계약의 내용(납품기한 등)이나 해제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위 각 지출비용의 회수가능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갑 제12 내지 14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그 주장과 같은 비용 지출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

3)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

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, 피고의 계약금 반환의무 및 손해배상의무는 원고의 위 인도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(대법원 1996. 7. 26. 선고 95다25138, 25145 판결 참조).

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예비적 항변은 이유 있다.

4) 소결론

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5,990,000원(= 계약금 25,000,000원 + 손해배상금 990,000원) 및 그 중 계약금 25,000,000원에 대하여 수령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. 1. 17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 6%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원고는 계약금 및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위 인정의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연1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, 원고가 이 사건 기계 인도 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·입증이 없는 이상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피고의 계약금 및 손해배상금 지급채무가 지체에 빠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, 위 인정의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』

2. 결론

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이다.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, 피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김현룡, 판사 하승수, 판사 서영우